

## 시민고충처리위원회(지방옴부즈만) 고충민원 처리사례

□ 민원 제목 : □□□읍 ○○리 산△△△-△번지 소나무고사 및 불법  
벌목에 대한 민·형사상의 책임과 피해보상 신청

### □ 신청 취지

- 신청인소유 토지(□□□읍 ○○리 산△△△-△번지)는 인접한 □□□  
□ ▽ ▽ 단지건설에 따른 매립으로 ▽ ▽ 단지 지면보다 낮아졌고  
이로 인한 침수피해를 입어 소나무 5그루가 고사하였고 이중 4그  
루는 불법으로 벌목이 되었기에
- 소나무 고사와 불법벌목에 대한 민·형사상의 책임과 피해보상 신청

### □ 피신청인 등의 주장

- 소나무고사에 대한 손해배상(수용요청) 관련
  - 수목고사원인을 단일한 인위적 요인으로 특정할 수 없음(지리적으로 부  
족한 일조량, 수목관 수관경쟁으로 인한 자연도태, 수목의 노후화, 토지복  
토로 인한 배수불량등 자연적, 인위적 인자가 상존)
- 소나무 불법벌목에 대한 민·형사상 책임 관련
  - 불법벌목에 대해서 사실관계를 명확하게 판단할 수 있는 객관  
적인 자료가 없음

### □ 사실관계

- 기업지원과
  - 2020. 12. 7. : 민원신청서 제출
  - 2020. 12. 10. : 현장조사
  - 2020. 12. 15. : 민원신청에 대한 1차 회신

- 2020. 12. 28. : 민원인과 기업지원과장 면담

- 2021. 1. 6. : 민원신청에 대한 2차 회신

○ 산림과

- 2020. 12. 14. : 민원신청서 제출(수목고사원인규명요청)

- 2020. 12. 18. : 현장조사

- 2020. 12. 22. : 민원회신(전문조사기관에 의뢰예정)

- 2020. 12. 23. : 시료채취(산림과)

- 2020. 12. 24. : 소나무재선충병 검경의뢰 요청(산림과→강원도산림과학연구원)

- 2021. 1. 4. : 소나무재선충병 검경결과 회신(강원도산림과학연구원→산림과)

- 2021. 1. 5. : 관련부서 의견요청에 대한 회신(산림과→기업지원과)

○ 사회갈등조정위원회

- 2021. 1. 13. : 사회갈등조정위원회 방문하여 상담

- 2021. 1. 14. : 사회갈등조정위원회 1차 현장조사

- 2021. 1. 18. : 사회갈등조정위원회에 민원접수

- 2021. 2. 19. : 사회갈등조정위원회 2차 현장조사

- 2021. 2. 26. : 기업지원과에 의견요청

- 2021. 3. 19. : 기업지원과의 의견회신

□ **관계 법령 등**

○ **【강릉시 사회갈등조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】 제12조(위원회 결정)**

○ **【강릉시 사회갈등조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】 제5조(민원의 각하 등)**

□ **판단 및 결론 [의견표명 및 각하]**

○ 수목고사관련 보상요구에 대한 판단

- 본 신청사건의 수목고사의 원인은 소나무의 생태적 특성에 비추어 침수가 결정적 원인이 되었다 할 수 있을 것이며 신청인 토지의 침수는 ▽ ▽ 단지조성 매립공사에 요구되는 적절한 배수로 설비가 확보되지 못하였음에 비롯되었다고 볼 수 있다.
- 다음으로 피해회복방법에 대해 살펴보면 첫째, 고사된 소나무의 피해배상 및 재발방지를 위한 배수로 정비공사를 하는 방법, 둘째, 피해토지를 매수하는 방법이 있다 할 것이다. 먼저 고사목의 피해배상 및 배수로 정비공사를 하는 방법은 침수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종국적인 조치가 필요하다는 점, 추후관리시 발생하는 비용문제, 현재의 지형적, 구조적 상황에 맞는 공사방법 등을 고려해보면 오히려 해당토지의 매수비용을 상회할 수도 있다고 판단된다.
- 그렇다면 강릉시가 이를 매수하여 ▽ ▽ 단지주변을 녹지, 휴게공간으로 조성하는 등 추후 활용계획을 수립하는 것도 강릉시의 재정적 효율성을 확보하고 적극적인 민원해소를 위한 합리적인 방법이 될 수 있다 할 것이므로 이에 대하여 피신청인은 일반회계로의 매수를 회계과와 협의하여 추진할 것을 의견표명한다.

○ 불법벌목관련 보상요구에 대한 판단

- 「강릉시 사회갈등조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」 제5조 제1항 제3호는 민원에 대한 각하사유로 “수사 및 형집행에 관한 사항으로써 그 해당기관에서 처리하는 것이 적당하다고 판단되는 사항 또는 감사원의 감사가 착수된 사항”을 규정하고 있으며
- 신청인의 주장을 판단하기 위해서는 불법벌목에 대한 사실관계의 규명이 전제되어야 하며 이는 수사에 관한 절차라 할 것이므로 불법벌목과 관련한 신청인의 주장은 「강릉시 사회갈등조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」 제5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각하